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832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3

I. 개요

1.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83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4. 9. 10.

(3) 회 부 일 : 2024. 9.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치료·보호 목적 외 징벌 등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강박하거나,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환자를 병실에 강박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지시·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런데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신체 제한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로서 비자발적 입원치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 치료는 정신질환자를 무력화된 존재로 느끼게 하여 회복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강제 치료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령에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강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3항·제89조제1항제11호 신설).

또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시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 조사에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II. 검토의견

1.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 개정안은 격리 또는 강박과 같은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설></u>	<u>16.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입원과, 신체적 제한 등 본인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 한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 안</u>
<u>16.</u> (생략)	<u>17.</u> (현행 제16호와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 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행	제10조(실태조사) ① ----- ----- -----. ----- -----

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② ~ ⑥ (생략)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생략)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제8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8. 비자의 입원 및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며,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격리실에서 단독으로 시행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과태료) ① -----

-----.

1. ~ 10. (생략) <u><신설></u>	1. ~ 10. (현행과 같음) <u>11.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 하여 신체적 제한 조치를 지시 하거나 이를 실행한 자</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보건복지부가 제정하여 운용 중인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를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박’을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시행의 원칙, 시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침만으로는 규범력이 약한바, 개정안은 격리·강박의 기준과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묶는 행위인 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격리(강박)실에는 1명만 입실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박이 격리실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실무에서 반영되고 있음¹⁾.

1) 「격리 및 강박 지침」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가. 격리(강박)실의 구조

▪ 격리(강박)실이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보호실을 말한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기준과 방법도 해당 지침은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격리 및 강박 지침」은 법률에 근거한 시행규칙으로 격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침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안 제89조제1항제11호와 같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

□ 다만, 개정안 제89조제1항제11호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으로서 제75조 제2항과 제3항을 모두 담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적용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이 실태조사²⁾의 한 항목으로서 신설하려는 제10조제1항 제8호 ‘비자의 입원 및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정신장애 유병률이나 정

* 보호복·보호조끼·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

- 격리(강박)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하고 관찰을 지속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격리(강박)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 벽면에는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 강박실을 격리실과 분리하여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박실 벽면에 완충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강박 도구

-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척해야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率) 및 유병요인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4.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5.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7.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건강 상담 비율 등의 내용을 설문 기입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형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임상적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의견³⁾이 타당하므로 제10조가 아닌 제16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운영)의 규율사항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보건복지부는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사항의 존재 여부와 보완해야 할 격리·강박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주요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개정안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정하는 내용은 그 구체성과 명확성에 공감하면서도, 같은조 같은항 제5호에서 정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을 통하여 이미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행되고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국립정신건강센터	○비자의 입원 및 신체적 제한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인 실태조사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보임. ○신체적 제한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경우, 응급상황을 맞아 적시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할 것임.

3)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견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현행법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비자의 입원이나 본인의 동의 없는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키는 점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그것을 위한 치료인력의 인프라 확충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정신의료기관에서 신체적 제한을 실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과 의료지식을 갖추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것을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문 의 처

02)6788-5498